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5. 15.

발 의 자 : 이정희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함 (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와 회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나. 예산조치 : 합의

다. 합 의:

라. 기 타: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임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
 -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 마련
 -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전문가
 -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 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④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31조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

-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0.1.28, 2002.6.3>
 -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접수 및 취업알선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제14조

- 제14조(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운영) ①거주지보호기관장 및 제15조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내 신변보호기관장, 사회복지관장, 주요 종교·민간단체의 장, 주요 기업체의 대표 등이 지정하는 자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지역협의회에서 선임되는 자가 된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 성 의 원 서 명**

의 원 명	서 명	비고
0) 73 5)	OTA	
지신 내경 121	31	
五日为	mitt	
Q 20 00	enour	
专双号	Lung.	
ar 7 B	Maring	
2 23	tari	
型型型	19080	
2 % M	2/4	
弘公为	-35	
,	P	
		-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Ⅰ. 심사경과

-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7년 5월 15일 이정희 의원외 9인
- 2. 회 부 일 자 : 2007년 5월 15일
- 3. **상** 정 일 자 : 제1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5. 21)

상정, 심사,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정희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와 회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내지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한봉전)

○ 본 조례 안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적응과 조

기정착을 유도하기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례 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안 제2조에서 대전광역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 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 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임무를,

조례 안 제3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안 검토결과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주민이 2007년도 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0,000여명에 이르고, 우리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도 34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 적응과 정착이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토 론 요 지 : 생 략

Ⅴ. 질의답변요지: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